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사법연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수 등 미 반영된 업무를 분장 사무에 반영하여 사법연수원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사법정보 소통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정보통신기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법지식정보 서비스 창구의 역할을 통한 사법부 이미지 제고 및 정보화 업무 역량 집중을 통하여 서비스 다양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원도서관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감사과를 신설하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후견사건 증가 및 중요성 증대에 따라 후견업무의 전문성 강화,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후견과를 신설함

3. 주요내용

- 사법연수원 연수과의 분장사무에 미반영 된 연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별표 2의1)

- 법원도서관 지식운영과의 분장사무에 사법정보 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별표 2의4)
- 서울고등법원에 감사과를 신설하고, 그 분장사무를 정함(안 별표 3의1, 별표 3의2)
- 서울가정법원에 후견과를 신설하고, 그 분장사무를 정함(안 별표 5의1, 별표 5의2)

4.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1 및 별표 3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1 및 별표 5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1]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과 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1. 서무, 인사, 문서, 연금, 통계, 표창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관인의 관수 2. 청사의 유지, 관리 및 기숙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연 수 과	1. 법관 연수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관 연수결과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관 연수교재 및 자료의 수집, 작성,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사법연수생 수습(위탁교육 포함, 이하 같다)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법연수생 수습결과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6. 사법연수생 수습 교재 및 자료의 수집, 작성,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7. 사법연수생 수습의 평가시험 및 성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민사, 행정, 특허, 형사, 선거, 가사, 소년·가정보호 등에 관한 재판 관련 실무제요 및 각종 실무편람 발간에 관한 사항 9.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등 기타 재판 관련 전문가 연수에 관한 사항 10. 법실무교육 등 각종 연수 및 교육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1. 국제사법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법정언행컨설팅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별표 2의4]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과 명	분 장 사 무
총무과	1. 서무, 인사, 문서, 연금, 통계, 표창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관인의 관수 2. 자료관리 업무의 계획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원역사의 편찬과 법원사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자료편찬과	1. 판례공보 등 편찬 발간에 관한 사항 2. 사법자료의 수집, 정리,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자료기획과	1.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배부, 등록, 제적, 보관전환 및 자료교환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목록작성 및 분류에 관한 사항 3. 각종 서지에 관한 사항 4. 각급법원 및 기관도서관의 도서업무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지식운영과	1. 도서관 자료의 열람, 대출, 보존, 관리 및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 2. 사법정보 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법원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홈페이지 등 대국민 사법지식정보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법영상서비스(법원TV)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종합법률정보 데이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3의1]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법원별	국명	과별
서울고등법원	사무국	총무과, 관리과, 감사과, 시설과, 민사1과, 민사2과, 형사과, 행정과
대전고등법원	사무국	총무과, 민형과
대구고등법원	사무국	총무과, 민형과
부산고등법원	사무국	총무과, 시설과, 민형과
광주고등법원	사무국	총무과, 민형과
수원고등법원	사무국	총무과, 민형과

[별표 3의2]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과 명	분장사무
총무과	서무·인사·관인과 도서의 관수·문서·연금·기획·통계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만,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의 총무과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
관리과	청사의 배정에 관한 사항 청사의 사용, 유지에 관한 사항 후생에 관한 사항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감사과	관하 전체기관 정기·수시일반사무감사, 기획감사, 복무기강감사, 그 밖에 법원장이 특별히 명한 감사의 계획, 집행 및 그 밖의 사항의 처리 관하 전체기관 법원직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와 그 요인 분석 관하 전체기관 법원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에 관한 사항
시설과	관내 사법시설 건축, 토목공사의 관리 및 감독 관내 사법시설 전기, 기계 등 설비공사의 관리 및 감독 관내 사법시설 보수 공사의 설계 검토 및 시공 감독 관내 등기소·독신자 숙소의 신·증축 및 기타 사법시설 증축의 설계 검토 관내 사법시설의 사용·유지에 관한 기술적 사항
민사과	민사 및 가사에 관한 사건의 접수처리·심판의 참여·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형사과	형사에 관한 사건의 접수처리·심판의 참여·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행정과	행정에 관한 사건의 접수처리·심판의 참여·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감사과, 시설과, 민사과(민사1과 및 민사2과를 포함한다), 형사과 및 행정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법원의 사무국 관리과, 감사과, 시설과의 분장 사무는 총무과에서, 민사과(민사1과 및 민사2과를 포함한다), 행정과 및 형사과의 분장사무는 민형과에서 각 관장한다.

[별표 5의1]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법원별	국명	과명
서울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가사과, 후견과, 조사과, 가족관계등록과
인천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수원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대전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대구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부산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울산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광주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별표 5의2]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과 명	분 장 사 무	비 고
총 무 과	서무, 인사, 관인과 도서의 관수, 문서, 연금, 기획, 통계, 회계,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합민원실	1. 가사, 소년·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 및 기타 관계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가사비송·가사신청 사건의 접수 및 처리 3.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접수 4. 민원안내	종합민원실을 두지 아니한 가정법원의 경우는 그 분장사무 중 제1호, 제2호, 제4호는 가사과에서, 제3호는 총무과에서 각각 관장한다.
가 사 과	가사 및 소년·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재판참여, 기록 및 문서의 작성 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후 견 과	후견관련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참여, 후견감독, 후견등기, 후견개시 조사에 관한 사항	후견과를 두지 않은 가정법원의 동과의 분장사무는 각 소관과에서 관장한다.
조 사 과	가사 및 소년·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 가사비송·가사신청 사건의 조사명령에 관한 사항	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가정법원의 경우는 그 분장사무를 가사과에서 관장한다.
가족관계 등록과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처리,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과를 두지 아니한 가정법원의 경우는 그 분장사무를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 관할구역 내에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위의 분장사무 중 종합민원실, 가사과, 후견과, 조사과의 분장사무는 가사과에서, 가족관계등록과의 분장사무는 총무과 또는 가사과에서 관장할 수 있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225